

영등포구의회
제15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1. 2. 2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6호로 2011년 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2004년 수수료 조정 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다가 지속적인 유류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청소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,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므로,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●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인상안

구 분		부과기준	부과금액		인상율
			현 행	개정안	
분뇨 요금		10 L	128원	140원	9%
개인하수 처리시설	기본요금	750 L 까지	18,710원	21,140원	13%
	초과요금	100 L 당	1,320원	1,490원	13%

(안 제7조제1항의 [별표]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, 제4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서울시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

- 양천구 외 17개구(2007 ~ 2010년 개정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(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(별표))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인상 조정코자 제출된 조례안 임.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10ℓ 당 “128원”을 “140원”으로 인상하고,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기본 부과금액(750ℓ까지) “18,710원”을 “21,140원”으로, 초과 부과금액(100ℓ당) “1,320원”을 “1,490원”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-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04년 3월 23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유류비와 물가인상 등 수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,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.

- 수수료 인상안은 최근 4년간 개정을 추진한 서울시 18개 자치구 수수료 현황을 참작하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신중을 기해 조정된 것으로 보여짐.
- 그러나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은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고, 타 수수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참고자료 : 1. 관련법령
2. 구별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현황

관 련 법 령

하수도법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7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)

- ① 분뇨수집·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분뇨수집·운반업자(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)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·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자치구별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현황

(2010. 12. 31. 현재)

(단위 : 원, %)

자치구명	인상연월일	인상내역				분뇨 (18ℓ)	비고
		기본요금	인상률	초과요금	인상률		
구로	2010-12-01	22,000	17.55	1,600	17.65	230	
강서	2010-07-01	18,330	3.68	1,320	13.79	230	
서대문	2009-12-31	22,500	19.62	1,500	10.29	230	
동작	2009-12-30	21,800	15.96	1,600	18.52	230	
중랑	2009-12-29	22,570	19.99	1,600	19.31	230	
서초	2009-11-02	19,500	10.29	1,380	18.97	240	
금천	2009-09-01	22,350	18.82	1,610	18.38	230	
송파	2009-07-13	19,810	5.32	1,650	22.40	260	
노원	2009-06-01	22,570	19.99	1,620	17.39	270	
강남	2009-04-01	19,500	10.29	1,380	18.97	240	
관악	2009-03-10	22,900	21.81	1,600	18.52	283	
은평	2008-11-01	22,500	19.68	1,500	15.38	260	
강동	2008-07-01	22,400	19.52	1,560	18.18	280	
성북	2007-12-01	22,560	20.00	1,630	19.85	280	
동대문	2007-08-12	20,000	6.33	1,500	10.29	230	
도봉	2007-05-01	22,850	21.48	1,600	21.21	280	
강북	2007-03-23	23,430	24.56	1,640	24.24	280	
양천	2007-02-20	18,800	6.33	1,300	13.04	235	
종로	2005-07-29	18,880	6.79	1,360	16.24	226	
마포	2005-07-25	18,810	6.39	1,430	23.28	450	
광진	2005-01-01	18,810	6.39	1,350	16.88	230	
성동	2004-08-16	18,810	6.39	1,350	16.88	230	
용산	2004-05-28	18,810	6.39	1,360	17.24	250	
영등포	2004-03-23	18,710	5.83	1,320	13.79	230	
중구	2003-11-18	18,810	6.39	1,360	17.24	230	
평균		20,720	13.03	1,485	17.52	255	
최대		23,430	24.56	1,650	24.24	450	
최소		18,330	3.68	1,300	10.29	226	